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2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1. 농업기계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 마련 의무 규정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제3조제2항을 유사 입법례처럼 ① 기술개발 대책과, ② 자금지원 대책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 대책의 경우 의무사항인 “강행규정”으로, 자금지원 대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가격 인상 금지 및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제재 조항을 추가할 경우 불필요한 입법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농업기계 시장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마련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여 이중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문제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업기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농식품부는 농업기계는 제도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비해서도 기종 및 모델이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할인기간, 재고, 단종, 옵션 및 판매점의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

해 특정 시점의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농업기계 자금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실 수요 파악이 아닌 전국 농업기계 판매가격 및 수량의 전수 조사는 조사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인력대비 자금지원 규모 산정이라는 목적 달성과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